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자주 묻는 Q&A 정리

1. 일반사항

Q.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지원 접종대상자?

구 분		접종기간	구 분		접종기간
어린이	2회 접종 대상자	'22. 9. 21.(수) ~ '23. 4. 30.(일)	어르신	만 75세 이상 어르신 ('47. 12. 31. 이전 출생자)	'22. 10. 12.(수) ~ '22. 12. 31.(토)
	1회 접종 대상자	'22. 10. 5.(수) ~ '23. 4. 30.(일)		만 70~74세 어르신 ('48. 1. 1. ~ '52. 12. 31. 출생자)	'22. 10. 17.(월) ~ '22. 12. 31.(토)
임신부	임신헌인서, 산모수첩 등 제시자	'22. 10. 5.(수) ~ '23. 4. 30.(일)		만 65~69세 어르신 ('53. 1. 1. ~ '57. 12. 31. 출생자)	'22. 10. 20.(목) ~ '22. 12. 31.(토)

Q. 만 65~69세, 만 70~74세,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연령별 접종 시기를 달리했는데, 각 연령대별 사업 시작 시기 전에 접종한 경우, 비용상환이 가능한가요?

A. 연령대별 사업 기간 준수 및 예외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단, **신분증에 기재된 주소지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지역특성에 의한 예외인정기준에서 제외되어 시행비 상환이 불가능**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어 가급적 연령별 기간을 준수하시길 권장합니다.

*[어르신 사업 예외인정기준]

- 대상: 만 65~69세 어르신이 10.12.~10.19., 만 70세~74세 어르신이 10.12.~10.16.에 내원한 경우, 예외인정기준에 해당하면 접종가능
- 예외인정기준
 - ① (지역특성) 섬·벽지 지역(「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의료취약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 보험료 경감 대상 지역)이 포함된 시군구에 거주(주민등록상 거주지)하는 경우
 - ② (당일진료)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이나 갑작스럽게 발생한 질환 등으로 당일 진료 발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진료내역 확인된 경우 일괄 신청됨)
 - ③ (촉탁의) 관할보건소가 사전에 인정한 위탁의료기관의 촉탁의가 시설**에 방문하여 접종
 **촉탁의 지정이 가능한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해당
 - ④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의 종류 15종,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의료기관 재방문이 어려운 장애인 해당

Q. 어르신이 예진표 작성이 어려워 의료기관 직원이 대신 작성후 서명하였습니다.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본인 작성이 어려우신 경우, 구두로 예진표 사항을 문진한 후 예방접종 전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서명하시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가끔 본인의 접종 여부를 모르거나, 접종 후 확인차 예진표 원본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Q. 생후 6개월 이상 만 13세 어린이의 접종 횟수별 접종 시기를 달리했는데, 1회 접종대상자를 9. 21.~10. 4.에 접종한 경우 비용상환이 가능한가요?

A. **비용상환이 불가능합니다.** 백신 공급 가능 시기 및 2회 접종이 필요한 소아의 적절한 면역획득 등을 고려하여, 2회 접종이 필요한 대상자는 9. 21.(수)부터, 1회 접종이 필요한 대상자는 10. 5.(수)부터 접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Q. 사업개시일 이전에도 접종이 가능한가요?

A. **사업 개시일 이전에 접종한 건은 비용상환 불가능합니다.** 접종대상자의 연령 및 접종 횟수에 따른 사업 시작일 이후에 접종된 건부터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단, 접종 내역의 전산등록은 가능합니다.

Q. 의사 1인당 1일 접종자 수 100명 이상 시 비용상환이 안되나요?

A. 안전한 예방접종 운영을 위해 예진의사 1인당 1일 접종자 수를 100명으로 제한하며, **3회 위반 시 위탁의료기관 계약 해지로 해지일로부터 1년간 사업 참여 제한이 가능합니다.** 사업 기간 내 사업 대상에게 접종 시 비용상환은 가능하나, 위탁의료기관 계약 해지 시에는 비용상환이 불가능합니다. **100명 기준에 코로나19 예방접종자 수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Q. 장애인 거주시설도 축탁의 접종이 가능한가요?

A. 사회복지사업 운영 기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항) 중 축탁의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시설은 거동 불편 어르신 사업대상자 범위에 해당하여 축탁의 접종이 가능하므로, **장애인 거주시설에 축탁의가 지정되어 있다면 접종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업운영기관: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주거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Q. 어르신의 경우 고혈압 등 타 질환으로 진료와 예방접종이 동일한 날에 이루어지더라도 시행비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예 그렇습니다. 진료비와 무관하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한 경우 시행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어르신 사업개시 이후 일자부터 가능(10. 12.(수)부터)

Q. 임신부가 정기검진 등으로 진료가 있는 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동시에 이루어지더라도 시행비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예 그렇습니다. 진료비와 무관하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한 경우 시행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신부 사업개시 이후 일자부터 가능(10. 5.(수)부터)

Q. 2022년 9월생도 사업 기간 내 생후 6개월이 됩니다.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어린이 사업 대상은 2022년 8월 31일생(2023년 2월 말 기준 생후 6개월 도래자)까지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받는 경우 최소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Q. 생후 24개월 어린이가 만 3세 이상에서 사용가능한 4가 백신을 접종하였을 때 비용상환이 가능한가요?

A. 백신별로 허가연령이 다르므로 허가연령을 준수하여 접종해야 합니다. 22-23절기 만 3세 이상에서 사용 가능한 백신은 ① 일양약품(주) 테리텍트 프리필드시린지주 ② (주)한국백신 코박스인플루4가PF주이며, **생후 6~35개월 대상자에게 해당 백신을 접종했을 경우에는 비용상환이 불가합니다.**

Q.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기준으로 지원한다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외국인등록번호 발급자,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내·외국인 등) 대상자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A. 외국인 등록번호 발급자, 관리번호를 받은 외국인(외국인등록 면제자*제외)도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하면 내국인에 준하여 지원 및 비용상환이 가능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주한 외국공관 직원 자녀 등, ※ 2017년부터 3개월 미만 단기체류자는 관리번호 발급자에서 제외함.

Q. 인플루엔자 사업기간 내 접종한 내역이 누락되었습니다. 사업기간 이후 접종력을 등록할 수 있나요?

A. 사업기간 이후에도 접종력 등록은 가능하나, 어르신의 경우 비용상환을 위해 접종 등록이 가능한 기간을 사업종료 전에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그러나 중복접종 방지 등을 위하여 접종 당일에 전산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임신부 인플루엔자 대상자 여부를 서류로만 확인하면 되나요? 해당 서류 사본 등을 보관해야 하나요? 보관해야 한다면 몇 년인가요?

A. 산모수첩, 임신 확인서, 임신진단서 등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하고, 예방접종력 입력 시 예방접종 당시 임신주수 및 출산예정일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서류는 별도 보관할 필요 없습니다.

Q.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접종이 가능하지만, 오접종 방지를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A. 오접종 방지를 위해 단계별(접수, 예진, 접종단계)로 접종대상자 및 접종 백신 종류 확인하도록 합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잘못 알아 듣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름과 생년월일 등 2가지 이상의 정보로 대상자를 철저히 확인합니다. 더불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자는 코로나 19와 다른 고유색(녹색)의 스티커, 목걸이 등으로 구분하도록 합니다. ※ 중복접종 등 오접종 발생 시 시행비 차감

2. 시스템 관련

Q. 어린이·임신부 백신 '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 으로 공급받은 위탁의료기관입니다. 접종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A. 현물공급 인플루엔자등록시스템(갈색창) > 접종관리 > 인플루엔자접종등록 > 접종대상자 여부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등록합니다.

Q. 어린이·임신부 백신 '민간개별구매' 한 의원급 소아청소년과 위탁의료기관입니다. 접종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A.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파란창) > 등록업무 > 예방접종등록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등록합니다.

Q. 사전현물공급 방식으로 백신을 공급받아 현물공급 인플루엔자 등록시스템을 이용하는 의료기관입니다. 어린이·임신부와 어르신 국가 사업 대상자 모두 시행하는데 기본값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기본값 설정은 접종자, 로트번호 입력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어린이·임신부와 어르신 백신의 로트번호가 다르다면 두 대상자 중 가장 많이 접종하는 백신의 로트번호를 기본값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값으로 설정한 백신과 다른 로트번호 백신을 접종한 경우 개별 지정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용상환 접수 후에는 의료기관에서 로트번호 수정이 되지 않으므로 접종 등록 시 로트번호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만 3세 어린이가 방문하였습니다. 1회 접종력만 있는 경우, 2회 접종 대상자인가요?

A. 맞습니다. 지난 절기 1회 접종력만 있다면 이번 절기 2회 접종 대상자입니다. 이런 경우 접종등록은 (처음접종) > 2차 접종란에 기록합니다.

Q. 과거 접종력이 2회 이상 있는 만 8세 어린이가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절기 1회 접종대상자인가요?

A. 맞습니다. 연달아 맞지 않았어도 9세 미만에서 2회 접종력이 있는 경우 이번 절기 1회 접종 대상자입니다. 이런 경우 (매년접종)란에 기록합니다.

Q. 사전현물공급 백신 추가 수요 요청을 원합니다. 시스템상에서 언제부터, 어떻게 요청할 수 있나요?

A. 사업시작일 이후부터 추가 수요 요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보건소에 재분배 가능 수량이 있어야 하므로 시스템 신청 전에 예방접종실 (460-0014, 3237)로 먼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현물공급인플루엔자등록시스템 > 백신관리 > 백신요청 > 추가요청량 등록란에 수량 입력 후 등록버튼을 클릭하면 우측 상단의 백신 요청내역에 추가됩니다. 보건소 승인 후 백신 입고가 이루어지면 우측 하단의 백신 입고내역에서 입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접종등록과 함께 비용상환 신청한 지 2주가 지났는데, 시행비 입금이 되지 않습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이 무엇일까요?

A. 피접종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수정 전까지 접수 및 심사 불가하므로 대상자 주민번호를 잘 확인하시어 비용상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심사가 어려운 경우 질병관리청에 전문 심사 의뢰 및 회신 결과에 따라 상환 여부가 결정되므로 비용상환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개명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발급 후 첫 접종의 경우 행안부 확인으로 인해 익일 대상자 정보가 나타날 수 있음)

3. 백신수급 관련

Q. 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 받은 백신을 어린이(생후 6개월~만 13세) 또는 임신부에게 접종해도 되나요?

A. 백신 공급방식에 따라 사업 대상에게 다르게 접종해야 합니다. '사전현물공급'방식으로 공급받은 위탁의료기관의 경우 사업 대상별 구분 없이 접종 가능하나, 의원급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민간개별구매'방식으로 구매한 백신(어린이·임신부사업용)과 '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방식으로 공급받은 백신(어르신 사업용)과 구분하여 접종해야 합니다.

Q. 공급받은 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 백신을 모두 소진하고 백신 추가 신청 건의 공급이 늦어지는 공백기가 생긴다면 의료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다른 백신으로 먼저 접종을 하고 추후 백신을 공급받으면 문제가 되는지요?

A. 국가사업용으로 공급된 백신 외에 의료기관에서 자체 보유하고 있는 백신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백신이 소진되기 전, 관할 보건소에 추가공급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위탁의료기관에서 신청한 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 백신을 사업 기간 내 모두 사용하지 못해 백신이 남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처리되나요? 의료기관에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없나요?

A. 신청한 백신이 남을 경우, 사업기간에 종료된 이후 보건소에서 전량 회수 예정입니다. 사업기간 중에도 백신 재분배가 필요한 경우, 잔량백신이

많은 의료기관에게 보건소에 반납하도록 요청 드릴 수 있으므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과다한 백신 신청으로 사업종료 후 백신이 많이 남거나 보건소의 재분배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다음 연도 위탁계약 및 백신 배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사업기간 종료전 백신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 추가 신청용 백신을 수령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예방접종실(460-0014, 3237)에 반납/수령 의사를 말씀해주신 뒤 콜드체인에 유의하시어 예방접종실 운영시간(평일 오전9시~오후6시, 점심시간(12:00~13:00) 및 공휴일 제외)안에 반납해주시면 됩니다. 적정온도(2~8°C) 유지를 위해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 온도계를 부착한 아이스박스를 이용하여 운반하시기 바라며, 확인증 교환을 위해 꼭 예방접종실 직원을 통해 반납/수령 해주시기 바랍니다.

Q. 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 백신이 파손되거나 바늘이 오염되어 접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반품이 가능한지요?

A.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제품은 백신을 공급한 업체를 통해 교환 가능합니다. 단, 인수 이후 의료기관 보관 실수로 백신이 파손되거나 오염된 경우 의료기관 자체 보유 백신으로 접종 또는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이 불가능할 경우 보건소에서 해당 백신비에 대해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Q. 의원급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어린이·임신부 지원사업 백신 공급방식은 '민간개별구매'방식인데, 추가 구매(확보)가 어려운 경우, 보건소로부터 백신을 재분배(추가공급)받아 접종할 수 있나요?

A. 보건소로부터 사전현물공급 백신을 재분배(추가공급)받아 접종 가능하나 보건소 재분배 가능수량이 있어야 하므로 먼저 예방접종실(460-0014, 323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전현물공급 백신으로 실시한 예방접종은 시행비만 지급됩니다.

*보건소에서 재분배 전산 등록 시점 이후 시행비만 지급되므로 반드시 위탁의료기관(의원급 소아청소년과) 백신 소진 완료 확인 후 재분배 실시 (재분배 등록 시 의료기관 보유물량으로 접종의 경우라도 시행비만 지급 처리됨)